

Tax News Flash

- Transfer Pricing & Customs

September 15, 2025

삼성 KPMG TAX 6 본부는 글로벌 이전가격 이슈를 공유하고자 KPMG 에서 발간되는 TaxNewsFlash 발간물 및 Bloomberg 에서 발간되는 BNA Report 를 한국어로 요약하여 월 2 회 제공합니다. 밑줄 친 제목을 클릭하시면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OECD 발표자료 및 국제조세/관세 관련 이슈사항 및 동향에 대해서도 아래와 같이 정리하여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상세한 내용 설명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Key Contacts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1 이전가격

이탈리아: 글로벌최저한세 정보신고서 통지서

2025 년 8 월 7 일, 이탈리아 세무당국(ITA)은 GloBE 정보신고서("GIR")를 제출할 책임이 있는 법인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해야 하는 신고 양식("통지서")을 승인했습니다. 이 통지서는 글로벌 최저한세(Pillar Two) 규정에 따라 다국적 또는 국내 그룹의 일원인 각 이탈리아 법인에게 요구되는 "Comunicazione Rilevante"로 알려진 공시입니다.

그룹 내에서는 특정 현지 법인이 전체 구성기업 또는 일부 법인을 대신하여 통지서를 제출하도록 지정할 수 있으며, 그 외 경우 각 그룹 구성원은 ITA 에 별도로 통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통지서는 이탈리아 법률에 따라 설립된 현지 및 무국적 법인이 다른 그룹 법인에게 GIR 제출을 위임했음을 ITA 에 통지하는데 사용됩니다. 직접 GIR 을 제출하지 않기로 선택한 Top-up Tax 대상 법인은 아래 법인에 통지서 제출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 현지 이탈리아 법인
- 이탈리아 권한 있는 세무당국과 협정이 체결된 관할 구역의 최종 모회사 또는 다른 지정된 외국법인

해당 양식은 ITA 에 직접 또는 위임된 대리인이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양식과 관련 지침은 www.agenziaentrate.gov.it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식은 표지 및 섹션 A 로 구성되며 다음 정보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관련 다국적 또는 국내 그룹, 통지서를 제출하는 법인(즉, 독립적으로 GIR 을 제출하지 않는 그룹 구성원), 담당자, 최종 모회사(다수의 모회사 포함), 양식을 제출하도록 지정된 법인(현지 또는 기타), GIR 을 제출하도록 지정된 현지 법인, 보고 기간.

ITA 에 제출된 양식은 지정법인이 변경되거나 이전에 통보된 정보가 업데이트될 필요가 없는 한 이후 회계연도에도 유효합니다.

글로벌최저한세 정보신고와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출: ITA의 온라인 채널을 통해 NotificaGlobe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전자적으로 제출
- 마감일: 사업연도 종료 후 15개월(전환기의 경우 18개월, 그룹의 사업연도 종료일과 관계없이 2026년 6월 30일 이전에는 통지 필요 없음)
- 수정/취소: 이전 통지서를 대체하거나 취소하기 위해 위 마감일 내에 가능
- 벌금: 통지서를 전혀 제출하지 않거나 3개월 이상 지연 제출할 경우 EUR 100,000(최초 3개년 동안은 절반으로 감면); 잘못된 통지서를 제출하거나 마감일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할 경우 EUR 10,000-EUR 50,000

호주: 필라 2 글로벌최저한세 신고 의무 면제 관련 입법 초안

2025 년 8 월 27 일, 호주 국세청(Australian Taxation Office)은 호주 내 소득산입규칙(Income Inclusion Rule), 소득산입보완규칙(Under-Taxed Profits Rule) 및 국내 최저한세(Domestic Minimum Tax) 신고 의무 면제 관련 입법 초안(LI 2025/D17 조세행정확정 2025)과 해설서를 발표하였습니다. 해당 입법 초안은 필라 2 적용 대상 기업들의 글로벌최저한세 관련 신고 의무 면제 요건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저한세 신고 의무 면제 요건

국내 최저한세 신고 의무 면제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세무통합그룹 및 Multi Entry Consolidated(MEC) 그룹의 자회사에 해당하는 그룹사
- 글로벌최저한세 적용 대상 특정 합작투자사 및 그 자회사
- 호주 외 지역에 소재한 특정 그룹사
- 글로벌최저한세 적용 대상 유동화(securitization) 회사
- 도관(flow-through) 성격의 특정 그룹사

소득산입규칙 및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 신고 의무 면제 요건

일반적으로 그룹사는 소득납입규칙 및 소득납입보완규칙에 따른 추가세액이 발생하지 않은 사업연도에 한하여 소득납입규칙 및 소득납입보완규칙 추가세액 신고 의무 면제를 받게 됩니다. 이는 곧 그룹사가 아래의 소득납입규칙 및 소득납입보완규칙 추가세액 신고 의무 면제 요건들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소득납입규칙 추가세액 신고 의무 면제 요건

- 호주에 소재한 모회사가 아닌 경우
- 호주에 소재한 모회사로서 직간접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다국적기업 그룹 내 모든 구성기업, 글로벌최저한세 적용 대상 합작투자사 및 그 자회사가 호주에 소재한 경우
- 호주에 소재한 모회사로서 소득납입규칙이 순차적으로 적용되어 상위 모회사의 해당 관할지역 내 적격 소득납입규칙 적용에 따라 호주 내 중간 모회사의 소득납입규칙에 따른 추가세액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소득납입보완규칙 추가세액 신고 의무 면제 요건

- 세무통합그룹 및 MEC 그룹의 자회사에 해당하는 경우
- 호주에 소재하거나 호주 내 고정사업장을 보유한 글로벌최저한세 적용 대상 회사가 아닌 경우
- 글로벌최저한세 적용 대상 투자회사 또는 보험투자회사인 경우
- 글로벌최저한세 적용 대상 유동화 회사인 경우
- 다국적기업 그룹의 구성기업으로서 다음 중 한 가지 요건을 충족하여 소득납입보완규칙에 따른 총 추가세액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 1) 적격 소득납입규칙 적용에 따라 호주의 소득납입보완규칙에 따른 과세권 불행사
 - 2) 소득납입보완규칙 관련 전환기 적용면제 적용

02 국제조세

최신예규/판례: 사전-2025-법규국조-0238, 2025. 05. 20

제목: 지급보증 용역거래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으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 8 조 제 1 항 제 6 호를 적용할 때, 내국법인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2 조 제 5 항 제 2 호의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 수수료의 금액을 지급보증 용역거래의 가격으로 적용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것임

1)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국외자회사가 현지에서 자금을 조달할 때 금리를 절감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보증 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청구하고 있음.
- 보증요율은 무디스 모형을 따르는 국세청 내부 지침을 활용하여 산출하여 왔는데, 국외자회사의 신용도가 B2에서 B1으로 개선됨에 따라 지침에 따라 계산하면 개선 전보다 산출 범위가 상승하게 됨.

2) 질의요지

- 무디스 모형의 적용이 세무상 합리적이지 않은 경우, 무디스 모형이 아닌 국조법 시행령 제12조제5항제2호에 따른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 수수료의 금액을 정상가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답변내용

- 내국법인과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지급보증 용역거래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으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6호를 적용할 때, 내국법인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5항제2호의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 수수료의 금액을 지급보증 용역거래의 가격으로 적용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것임.

4) 관련 법령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조【정상가격의 산출방법】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용역거래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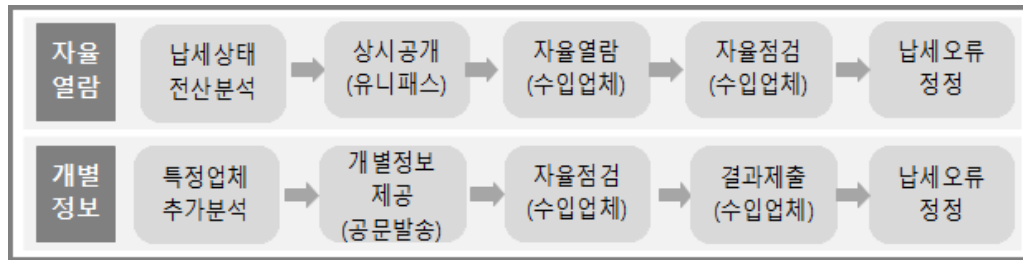
03 관세

수입기업의 납세신고 도움정보 서비스 활용 증가

1. 개요

납세신고 도움정보 서비스는 관세청에서 수입기업의 납세 현황을 주기적으로 진단하여 납세신고의 오류 가능성을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UNI-PASS) 또는 개별 문서 등을 통해 안내하는 서비스로 2019년부터 운영 중이며, 이를 통해 수입기업은 과세가격, 품목분류 등 세관이 안내한 오류 의심 항목을 스스로 점검해 보고, 수정신고 등으로 부족한 세액을 납부하여 사후에 발생할 수 있는 대규모 세액 추징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납세신고 도움정보 제공 방식>



2. 서비스 활용 현황

관세청에서는 올해 7 월까지 납세신고 도움정보 활용 현황을 중간 점검한 결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열람 업체는 62% 증가, 세액 정정 업체는 24% 증가하였으며, 전체 열람 업체 4,034 개사 중 자율열람한 업체는 3,446 개사로, 전년 같은 기간 1,939 개사에 비해 약 78% 증가하였고, 세관으로부터 개별정보 공문을 받은 기업 중에서는 341 개사가 스스로 점검에 참여하여 128 개사가 총 74 억원의 세액을 정정해(정정률 약 38%) 오류를 치유했다고 밝혔습니다.

※ ('25.7) 열람업체 4,034 개사, 세액 정정업체 204 개사 / ('24.7) 열람업체 2,483 개사, 세액 정정업체 165 개사

납세신고 도움정보 활용 사례

- 신규 수입한 플라스틱 재질 포장 용기(품목분류(HS)3923.10, 관세율 6.5%)를 종이 재질(품목분류(HS)4819.50, 관세율 0%)로 잘못 신고한 사실을 알려 업체가 4백만 원 수정신고 ⇨ 향후 5년간 누적 시 약 2천 4백만 원 추징 예방
 - 외환송금자료와 수입신고자료 간 차이 분석을 통해 업체가 미국에서 자동차부품을 수입하면서 권리사용료를 누락한 사실을 안내해 업체 스스로 4.8억 원 수정신고
- 상반기 도움정보를 통해 품목분류 오류를 조기 점검한 업체 관계자는 “추징될 뻔했던 세금과 가산세를 절감하고, 오류점수 면제 혜택까지 받았다”며 제도의 긍정적인 효과를 설명함

3. 제도 활성화를 위한 개선 방안

관세청에서는 수입기업의 충분한 점검기간 보장, 품목분류 오류 조기 점검안내 등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개선해갈 예정입니다.

- 개별정보 공문에 대한 점검기간의 경우, 공문을 받은 후로부터 최장 60일(2개월)이었으나, 현재 최장 120일(4개월)까지 늘어났으며, 이는 다국적 기업 등 자료 확인에 장시간이 필요한 경우를 감안한 조치임

※ (현행) 최초30일 + 연장30일 = 60일 ⇨ (향후) 최초30일 + 연장90일 = 120일

- '품목분류' 항목에서 신규 수입 물품의 품목분류 (HS) 오류 위험을 별도로 구분하여 수입 1~2년 차에 조기 점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고세율 품목을 저세율로 잘못 신고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대규모 추징 위험을 예방 가능함
 -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 사전심사*의 구체적인 신청 방법도 추가 안내하여, 품목분류 오류에 대한 판단을 지원할 계획
- *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 수출입자가 스스로 품목을 분류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관세청이 품목번호를 결정하여 회신해주는 제도

4. 정보제공 항목 및 열람방법

1) 정보제공 항목

항목	항목수	정보제공 내역
일반현황	8	수출입 실적 • 감면 • 체납 등 현황 자료
납세유의사항	4	과세신고, 품목분류, 환급, 기타 유의사항
기타 자료	7	절세 정보, 법 개정사항, 환급 • 감면 안내

2) 열람방법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https://unipass.customs.go.kr>)에 기업별 아이디(ID), 비밀번호(PW)를 통해 접속한 후, 메인화면에서 납세신고 도움정보 조회가 가능합니다.

※출처: <https://www.customs.go.kr/streamdocs/view/sd;streamdocId=72059351500090874>

[KPMG 의견]

납세신고 도움정보 서비스는 기업의 부담을 줄이면서 납세신고 성실도를 높일 수 있는 제도이며, 최근 들어 기업의 필수 서비스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동 서비스는 기업 스스로 세금 관련 추징 위험이나 오류 사항을 한번 되짚어 보고, 자율적으로 점검하여 납세 오류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사후 추징 및 가산세라는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KPMG는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제공되는 정보제공 내역 뿐만 아니라 확장 가능성이 있는 요소들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최적의 대응 전략 수립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Contact Point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Key Contacts

삼성 KPMG TAX6 본부



강길원 부대표(본부장)

T. 02-2112-0907



백승목 전무

T. 02-2112-0982



김상훈 전무

T. 02-2112-7939



윤용준 상무

T. 02-2112-0277



이영호 상무

T. 02-2112-6763



황수주 상무

T. 02-2112-6782



김태주 전무(관세)

T. 02-2112-7448



오영빈 상무(관세)

T. 02-2112-0435



김민철 상무(관세)

T. 02-2112-6763

home.kpmg/socialmedia



home.kpmg/kr/ko/home/services/tax.html

[Privacy](#) | [Legal](#) | [Unsubscribe](#)

27th Floor, Gangnam Finance Center, 152, Teheran-ro, Gangnam-gu, Seoul, Korea

© 2025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The KPMG name and logo are registered trademarks or trademarks of KPMG International.